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교 육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자
선 정 경 쟁 시 험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제8조 제2항 개정)

나.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진행예정('22.11.~'23. 1.)

3) 행정규제 : 규제사전심사결과, 규제심사 비대상

교육부령 제 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생략)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 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u>이 경우 검정은 제1 차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 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하 다.</u>	② ----- ----- ----- ----- ----- ----- -----, <후단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락처	(044) 203 - 6467